

[서식 예] 배당요구신청서(주택임차권자)

배당요구신청

사 건 OO타경OOO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자 OOO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겸 소유자 〈〉〉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배당요구채권자 ●●●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경매목적부동산 가운데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매각대금 가운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신청 합니다.

아 래

1. 임대차계약일 : 20 ○ ○ . ○ .

2. 계약당사자 : 임대인(소유자) ◇◇◇

임차인 ⑥⑥⑥

3. 임대차기간 : 2000. 0. 0.부터 2000. 00. 00.까지(2년)



4. 임대차보증금 : ○○○○원(월세없음)

5. 임차부분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전부

6. 입주일(주택인도받은 날짜): 20○○. ○. ○○.

7. 주민등록전입일 : 2000. 0. 00.

8. 확정일자 : 2000. 0. 00.

첨부서류: 임대차계약서사본 1통

주민등록표등본 1통

2000. 0. 0.

위 배당요구채권자(주택임차권자) ●●●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경매법원	배당요구 시기	※ 아래(1)참조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이해관계 인수만큼 부본첨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68조, 제88조
비용	• 인지액 : 불첩부		
기 타	 · 인지액: 불첩부 · 임금우선변제자의 배당요구시 제출서류: 확정판결(판결 이유 중에 배당 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)이나 체불금품확인원(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)+②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(사용자가 교부, 국민연금법 제77조), ④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중(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, 소득세법 제143조), ④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(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, 국민연금법 제75조), ④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,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), 위②→②바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근로자명부사본(근로기준법 제41조) 또는 임금대장사본(근로기준법 제48조)(다만,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②→②●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함) ·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없음.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. ·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: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		

※ (1) 배당요구시기

〈유체동산〉(민사집행법 제220조)

- ①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다.
 - 1.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
 - 2. 집행관이 어음·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을 받은 때
- ②민사집행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,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



수 있음.

〈채권과 다른 재산권〉(민사집행법 제247조)

- ①민법·상법,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.
 - 1.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
 - 2.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
 - 3.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
- 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함.
-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민사집행법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함.
-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.

〈부동산〉(민사집행법 제88조)

-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,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, 민법·상법,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.
-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함.